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성주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준용

○ 보육관련 보조사업 추가(안 제23조제2항제9호):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사업 시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가능(안 제23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3,000천원 정도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5. 28. ~ 6. 17.)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 가결(2015.6.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시행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생 략)	제4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보육전문가 및 보육프로그램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삭 제>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9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비용의 보조) ①(생 략)	제23조(비용의 보조)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
1. ~ 8.(생 략)	1. ~ 8.(현행과 같음)
<신 설>	9.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9.(생 략)	10.(현행 제9호와 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시행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할 수 있다.